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1. 2.

제 출 자 : 구미시장

1. 개정이유

- 가.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 나.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변영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 개설 운영에관한조례”로 조례제명 변경
- 나.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용어의 정의 신설
- 다.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신설
- 1) 정기시장은 대지가 1,000㎡ 이상
 - 2) 임시시장은 대지가 330㎡ 이상
- 라. 법령근거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조항 폐지
- 1) 제11조(보험가입)
 - ②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한꺼번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2)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제한) 제1항
 1. 이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있을 때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참고사항

- 가. 경교 55160-2670(2000. 7. 14)
- 1) 경북도 2000년 정부합동감사 현지처분 요구 사항
- 나. 행정자치부 11250-485(2000. 6. 1)
- 1) 규제개혁 현장 이행실태 점검결과 조치사항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가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장은 구미시장이 개설한다.

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시장은 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①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의 개소와 면적
3. 판매할 상품
4. 설비방법

5 영업시간

6 사용기간

7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

②월 또는 연액으로서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제8조에서 규정한 사용보증금을 구미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증금의 납입업무를 감면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사용기간내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사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의 장육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2】의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평수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도 이에 적용한다)

3 한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해당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33058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33058제곱미터로 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휴업할 때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의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6 과세시가 표준액이 같은 필지내에 2개이상의 점포가 있을때는 토지사용료 총액 범위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거 차등을 두어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

④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 보증금) ①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금은 점포의 위치와 종류를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③시장사용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때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 및 제13조 및 제15조의 부담 책임이 있을 때에는 체납된 사용료 및 가산금 또는 배상액과 부담액 등을 상계한 잔액만을 반환한다

제9조(시장의 사용자에게 대한 일반적 권한) 시장은 시장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관리신고의무) ①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나 시장의 허가없이 시장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용자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

⑤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곧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2 시장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 3 시장자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 4 시장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장의 사용자에게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폐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1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보고를 할 때
- 2 시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
- 3 시장이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 4 상품 또는 영업이 공안상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공익상 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 5 상품 또는 영업이 시장을 훼손하거나 또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게된 손해에 대하여는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설비의 변경금지) ①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에 위반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담금은 시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설비 소멸에 대한 책임) ①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담금은 시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사용 종료시의 설비 복구) ①사용자는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거나 또는 폐지 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자의 부담으로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

③제2항 부담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8조(관리운영) ①시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관리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수탁지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

③위탁 경영에 대한 관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징수의 위임) ①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위탁 경영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탁경영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위탁자는 계약액을 월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제20조(재원 및 회계) ①시장의 개축을 위한 재원은 개축점포 사용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②제1항의 보증금은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되 그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1조(상인단체의 구성) ①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시장변영 자치회(이하 '자치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1 시장 개축 및 관리에 대한 협조
- 2 신규 입주자의 추천
- 3 구성원의 친목
- 4 청소 소방, 방범 기타 시장관리에 대한 시장의 위촉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치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자치회의 해체 개편 또는 업무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이 조례에 위반할 때
- 2 시장내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 시장이 시장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임) 이 조례중 시장이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 장 명 칭 과 위 치

명 칭	위 치
해 평 시 장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
장 천 시 장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별표2】

시 장 사 용 료

1 시장의 계속사용

구 분	기 준	사 용 료
가. 시장 장육	연평당	토지 과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
나. 시장 노점	연평당	건물 과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
	연평당	토지 과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2 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구 분	기 준	사 용 료	
		한나절	총 일
가. 시 장 장 육	1일 1평당	600	1,000
나. 시 장 노 점	1일 1평당	300	500
다. 소채류 기타			
1) 화물자동차(2톤이상)	1회 1대당	2,000	3,000
2) 화물자동차(2톤미만)	1회 1대당	1,500	2,000
3) 경 운 기	1회 1대당	1,000	1,500
4) 우 마 차	1회 1대당	700	1,000
5) 리 어 카	1회 1대당	300	500